

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5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아파트형공장에대한감면)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8.23.
 -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95.8.31.)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류승권 세무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지방 재정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

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무원의 특별공적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고 이 경우에도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지급한도를 제한함(안 제3조제1호 및 제3조의2)

-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4호)
-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각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4조)
-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 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종전에는 그 징수액의 3/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100로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개인당 최고 월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므로써 직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1건당 3만원 이하이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적극적인 창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체납액 징수에 별다른 노력도 없이 체납자 스스로 납부한 것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는 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 만큼의 댓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채재선위원) : 세무공무원이 체납독려를 하지 않고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되는 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가?
- 답변요지(류승권 세무관리과장) :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세입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징수를 독려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으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국장과 과장급으로 구성함.
- 질문요지(金鍾烈委員) : 공유지 점용료부과등 세원누락에 대한 세원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지 체납자 자진납부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류승권 세무관리과장)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 포상금의 지급범위가 축소됨.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일자 : 1995.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징수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공무원의 특별공직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과년도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고, 이 경우에도 1인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지급한도를 제한함(안 제3조제1호 및 제3조의2)

다. 제안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3조제4호)

라.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각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마.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제15조
-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95.6.10. 조례 제3201호)제2조 내지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특별한 공로가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호 중 "100분의3"을 "100분의1"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 : 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 국제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내지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 3.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 "과년도채납액징수실적대상"을 "과년도미수액징수대상(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하고, "숨은세원발굴과정실적대상"을 "숨은세원발굴과정대상(포상금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

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표〉는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른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영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p>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수액 징수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공무원 또는 민간인 <p>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금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관 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재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3 2. (생략) 3.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변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 	<p>제3조(지급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00분의1 2. (현행과 같음)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

현행	개정안
<p>5. (생략) (신설)</p> <p>제4조(제안의 심사)제3조제4호의 제안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p> <p>제5조(대장비치)세입금과징부서는 별지제1호 서식의 과년도채납액징수실적대장 및 별지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제6조(포상금지급신청) 제3조 제3호내지 제5호의 포상금지급신청사유발생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세원발굴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p> <p>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미수액징수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소속하에 각국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 ○○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내지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p> <p>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p> <p>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⑥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대장비치)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p> <p>제6조(지급신청)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포상금지급)①구청장은 제3조의 각호의 사실을 심사확인하여 포상금은 지급한다.</p> <p>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제7조(지급)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3조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단위: 원)

징수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확인 (계장)	특별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도기분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 54g/m²
268mm × 190mm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단위 : 원)

납기	부과장(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세원	납 세 의 무 자			징수일자	징수 확인 (계장)	포상금지급		
	직급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신문용지 54 g/m²
268mm × 190mm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원)

신 청 자			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 2. 비고란에 포상금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신문용지 54 g/m²
190mm × 268mm